

## 조정 절차를 위한 청구인 안내서

직원 상해 보험과 관련된 양식 및 기타 정보는 가까운 직원상해보험위원회에 연락하시거나 이 위원회의 웹사이트 [www.wcb.ny.gov](http://www.wcb.ny.gov)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1. 조정** - 직원상해보험위원회는 회사나 보험회사가 허용하는 조정 신청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의 목적은 부상을 입은 직원과 보험회사/자가보험 고용주라는 양쪽 당사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구한 내용에 대해 유익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중재자** - 이 위원회는 청구에 대한 중재자로서 수석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청구서를 수령한 후 중재자는 전자식 케이스 파일의 모든 문서를 검토하여 양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나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중재자는 필요하다면 양쪽 당사자와 이야기하여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문서, 양식 또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3. 위원회의 전자식 케이스 파일** - 청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문서는 전자식 케이스 파일에 보관됩니다. 이 전자식 파일은 청구서의 모든 당사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4. 법률 고문** - 부상을 당한 직원은 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법률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고문은 조정 절차에서 부상을 당한 직원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직원이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조정은 그러한 대리인을 찾을 때까지 연기됩니다.

**5. 법률 고문을 위한 수수료** - 법률 고문을 고용한 경우, 법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위원회가 검토하며 승인될 경우 보험회사/자가보험 고용주가 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부상을 당한 직원은 보상 케이스를 대변하는 법률 고문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6. 조정안 결정** - 중재자는 전자식 케이스 파일을 철저히 검토한 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결정 사항을 제안하고 이것을 양쪽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양쪽 당사자와 위원회에서 미팅을 열고 미팅 후 결정안을 발송합니다.

**7. 조정 미팅** - 중재자는 양쪽 당사자와 위원회에서 미팅을 열어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팅에서 청구인을 대변하는 법률 고문이 없을 경우, 중재자는 청구인이 법률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률 고문을 찾을 때까지 미팅이 연기됨을 설명할 것입니다. 대리인이 없는 청구인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미팅이 종료되며 해당 케이스는 공식적인 공청회 절차로 회부됩니다. 대리인이 없는 청구인이 절차 진행에 동의할 경우, 이에 동의하는 양식에 서명하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미팅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자는 자체 재량으로 사전 공청회 컨퍼런스를 열어 법적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계속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양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립니다.

**8. 법률 고문이 대변하는 청구인을 위한 거부 기간** - 결정안이 접수된 후에는 양쪽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30일의 기간 동안 양쪽 당사자는 결정안에서 확인된 사항이나 판정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미팅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 양쪽 당사자의 미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의 거부 기간에 미팅에 대한 의견서나 요청이 없을 경우, 결정안은 최종 결정 사항이 됩니다.

**9. 법률 고문이 대변하지 않는 청구인을 위한 거부 기간** - 결정안이 접수된 후에는 양쪽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30일의 기간 동안 양쪽 당사자는 결정안에서 확인된 사항이나 판정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미팅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

양쪽 당사자의 미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 이내에 미팅에 대한 동의서나 요청서가 없으며 또한 직원 상해보험법 판사가 결정안을 승인할 경우 양쪽 당사자는 결정 사항이 승인되었음을 통지 받게 됩니다. 결정안이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대변인이 없는 청구인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안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대변인이 없는 청구인이 10일 기간에 위원회에 결정안에서 기권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당 케이스는 일반 공청회로 회부됩니다. 기권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 사항은 최종 사항이 됩니다.

**10. 거부 기간에 접수된 거부 의사** - 결정안에 요약된 확인 사항이나 판정 금액에 대한 거부 의사를 30일의 거부 기간에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자는 거부 내용을 분석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연락하거나 미팅 일정을 정해 양쪽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 케이스는 사전 공청회를 포함한 공청회 절차로 회부됩니다.

**11. 최종 결정 - 판정 금액 지급** - 보험회사/자가 보험 고용주는 결정안이 최종 사항이 된 후부터 10일 이내에 판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험회사/자가 보험 고용주에게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300는 부상을 당하나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12. 이의신청** - 최종적으로 결정된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3. 의학적 치료** -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필요한 의학적 치료는 장애 기간에 관계 없이 부상을 당한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결정안이 최종 사항이 된 후 추가적인 의학적 치료나 보상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며 중재자는 청구서를 다시 검토하고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14. 기밀성** - 청구서를 처리할 목적이거나 보상금 청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을 제외하고 직원 상해보험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상을 당한 직원은 양식 OC 110-a(보상 기록 공개에 대한 청구인의 승인)를 작성하여 보상 기록의 공개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15. 사기 행위 / 자격 상실** - 직원 상해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직원은 벌금, 징역 및/또는 직원 상해보험 혜택을 수령할 자격 상실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직원 상해보험법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일반적이며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나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